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4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영동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달성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신설(안 제3조)
- 다. 인터넷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시행사업 규정(안 제4조)
- 라. 인터넷 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단 규정(안 제6조)
- 마. 시민홍보단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2항)
- 바. 이벤트 참여자 경품 제공의 근거 마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5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 및 제5조(종전의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SNS 개설 및 운영

5.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 이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국 · 시 · 군 · 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군 · 의정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 부서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군민참여 등)”을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인터넷 홍보”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블로그기자 등)”을 “(시민홍보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블로그기자 등”을 “블로그기자, SNS 서포터즈 등(이하 “시민홍보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기자 등”을 “시민홍보단 중 블로그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시민홍보단은 인터넷 홍보 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 등의”를 “시민홍보단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자”를 “홍보”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민홍보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에의 군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를 “시민홍보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원고료·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보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과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를 “콘텐츠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로, “보상 및 표창”을 “표창”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품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
2.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3.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제공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 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u>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u>	<u>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u>

업을 시행한다.

1. 국·시·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운영)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SNS 개설 및 운영
5.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 이어야 한다.

1. 국·시·군·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군·의정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군민참여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블로그기자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② 인터넷 홍보 -----

----- 없으면 -----.

제6조(시민홍보단 운영) ① -----
----- 블로그기자, SNS 서포터즈 등(이하 “시민홍보단”이라 한다)---.

② 시민홍보단 중 블로그기자-----.

③ 시민홍보단은 인터넷 홍보 매체 -----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보상) 군수는 블로그기자와 인터넷 홍보 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

④ ----- 시민홍보단원에-----

-----.

1. ~ 3. (현행과 같음)

4. ----- 홍보 -----

⑤ 시민홍보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에의 군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① -- 시민홍보단 -

-----.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원고료·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인터넷 -----
----- 콘텐츠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에게 -----
----- 표창-----
---.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 (생 략)

제9조(경품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이벤트

2.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3.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제공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1.10. 일부개정·시행)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의정홍보, 이용자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2023.3.14. 타법개정, 2023.9.15. 시행)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